



한독상공회의소

정관

제1장 법적 근거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 (1) 한독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본 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어 명칭은 한독상공회의소이다.
- (2) 본 상공회의소는 본 정관과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된다.
본 정관의 한국어본은 독일어본 및 영문본에 우선한다.
- (3) 본 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등기된 사무실을 두며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4) 본 상공회의소의 관리 주체는 총회, 이사회 및 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문위원회 및/또는 기타 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
- (5) 본 상공회의소는 베를린 소재 독일연방상공회의소(이하 "DIHK")가 공인한 전세계 독일상공회의소 네트워크(Auslandshandelskammer,AHK)의 회원이다.

제2조 목적 및 업무

- (1) 본 상공회의소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경제적 및 상업적 관계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독일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일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와 이익에는 전문적 교육과 연수, 무역 박람회 및 컨벤션, 환경 관련 사항 및 관광 사업의 촉진도 포함된다.
- (2) 이를 위하여 본 상공회의소는 제2조(1)항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업무를 이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 정보 와 자문, 특히 자문 의견, 시장 조사 및 보고서를 제공하는 업무;
 2. 양국의 기업 간의 사업적 유대 관계 증진, 확대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업무;
 3.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계 인사들 간의 상호 접촉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업무;
 4. 양국의 정부부처, 공공당국 및 기타 기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독상공인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업무;
 5. 독일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배, 그리고 회람, 연간보고서, 회보 등의 형태로 산업 및 상업 발달에 대하여 보고하는 업무;
 6. 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자회견, 홍보세미나,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가하는 업무;
 7. 양국의 시장, 판매, 조달 및 투자 가능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8. 양국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업무;
 9. 기타 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 (3) 본 상공회의소는 DIHK 및 본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관련된 양국의 기관 및 당국과 긴밀하고 신뢰하는 협력 하에 활동을 수행한다.
- (4) 본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는 본 정관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5) 본 상공회의소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가진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상공회의소의 목적을 벗어나는 상업적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 자금 및 재산

- (1) 본 상공회의소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그 활동과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상공회의소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은 본 상공회의소의 비용과 본 정관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본 상공회의소의 자금과 재산은 본 정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임무와 활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본 상공회의소는 그 자원의 신중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비회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회원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본 상공회의소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받은 자금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회원의 회비
 - 업무에 대한 수수료
 - 무상 증여
 - 본 상공회의소가 투자한 재산의 이자 및 수익
 - 기타 교부금 및 보조금.

본 상공회의소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보조금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이나 대한민국에 소재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상공회의소는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그러한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협약에 명시된다.

- (4) 본 상공회의소는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이를 위하여 본 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장부 관행에 따라 회계 장부와 기록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매출입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이사회는 본 상공회의소의 재산의 처분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인 권한은 대표에게 위임한다. 본 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인 용도를 위한 보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는 범위 내에서 그 용도로만 해당 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 회원은 본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6) 제 26조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 시점에 구체적인 목적으로 목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잔여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DIHK의 권고에 의하여 해당 재산은 임시총회의총회의 결의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적 및 상업적 관계를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양도될 수 있다. 본 상공회의소가 체결한 보조금 협약에 따른 상환 의무는 본 상공회의소의 재산의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

제4조 책임

(1) 본 상공회의소의 모든 책임은 본 상공회의소의 재산으로 만으로만 제한된다. 이사회의 개별 위원이나 본 상공회의소의 회원의 개인적 책임은 배제된다.

(2) 본 상공회의소가 제3자의 자금을 위탁 받은 경우, 이는 별도의 현금 원장에 그 지출내역이 보고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납입되어야 한다.

(3) 본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제한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1) 본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로 구성된다.

- 법인회원
- 준회원(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각종 재단, 대학교, 협회, 조합, 연맹 등)
- 개인회원 (자연인에 국한)
- 명예회원 (자연인에 국한)

(2) 법인회원은 독일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독일, 한국 또는 다른 모든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법이나 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일 수 있다.

(3) 한국과 독일의 경제적 및 상업적 관계 또는 본 상공회의소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특히 공헌한 자연인들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한 본 상공회의소의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4) 준회원,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정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직간접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6조 회원 자격의 개시

(1) 회원 자격은 신청자가 입회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개시된다. 어떠한 신청자도 입회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본 상공회의소의 직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

(2) 가입 승인은 서면 신청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청자는 가입 신청에 의하여 입회 시 본

정관의 규정을 인정한다.

(3)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 결정으로 입회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

제7조 회원 자격의 정지

- (1) 회원 자격은 해당 회원의 사망, 탈퇴 또는 본 상공회의소에서의 제명으로 상실된다.
- (2) 회원의 탈퇴는 각 회계연도 말에 가능하며 최소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삼 (3) 개월 전에 서면으로 본 상공회의소에 탈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본 상공회의소의 탈퇴 의사 표시는 회계연도 말까지 회원 자격과 관련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이사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 삼 (3) 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5) 이사회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본 상공회의소의 이익과 본 정관의 목적에 반하는 제반 행위
 - 불명예스러운 행위.
- (6) 제명으로 인한 회원의 당해 회계연도 회비의 반환 및 본 상공회의소 재산에 관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1) 모든 회원은 본 정관에 따라 총회 참석권과 의안 제출권을 가진다.
- (2) 현재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법인회원은 모든 총회에서 직간접 의결권을 가진다.
- (3) 법인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법인회원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4) 의결권은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법인회원으로 하여금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위임장은 늦어도 총회개시 칠(7)일 전까지는 본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수령되어야 한다. 회원 1인은 4개 이상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 (5) 회원은 본 상공회의소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 상공회의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특별 요금으로 제공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상공회의소가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정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제15조 제(2) 항 제2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비가 면제된다.

(3)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한다. 회원 자격이 회계연도의 하반기에 개시되는 경우, 반기 회비가 부과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상공회의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1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되며, 본 상공회의소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적어도 육(6)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2) 규정에 의한 임무 외에 정기총회는 다음의 임무도 수행한다:

1. 대표, 이사회, 그리고 재무담당자 및 외부 감사로부터 보고서 수령;
2. 2년 임기의 회장 2인, 그 중 한국 국적의 회장 1인과 독일 국적의 회장 1인, 부회장 2인, 그 중 한국 국적의 부회장 1인과 독일 국적의 부회장 1인, 및 재무담당자를 선출. 이 경우 2년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날까지 연장되거나 그 날에 만료됨. 이들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임될 수 있으며 이에 재임기간은 연속하여 총 사(4)년으로 제한됨.
3. 이(2)년 임기의 이사회 위원 선출. 이 경우 2년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날까지 연장되거나 그 날에 만료됨. 재임은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 이사회 위원으로서 총 육(6)년 연속까지로 제한됨(회장, 부회장 및 재무담당자로서의 임기 포함);
4. 이사회 위원이 아닌 외부 감사를 선출;
5. 회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의결 사항을 결정;
6. 명예회원의 선임 결정;
7. 정관의 변경 및 개정에 관하여 결정;
8. 본 정관 제26조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중재위원을 선임.

제12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인 경우에 소집된다.

1. 이사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경우
2. 법인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안건의 주제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2) 규정에 의한 임무 외에, 그와 같이 소집된 임시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관 변경안,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에 관한 동의안, 이사회 위원의 조기 해임 (당연직인 대표 제외)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고, 기타 제출된 모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절차

- (1)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집 통지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본 상공회의소의 회보를 통해 전달된다. 소집 통지서에는 안건이 기재되어야 하고,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최소 사(4)주 전,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최소 이(2)주 전에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 (2) 총회는 한국 국적 회장이 개의하며 한국 국적 회장 부재 시 독일 국적 회장이 개의한다. 독일 국적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1인이 개의한다. 한국 국적 및 독일 국적 회장이 총회를 번갈아가며 주재하며 두 회장 모두 부재 시 부회장 중 1인이 주재한다.
- (3) 의결은 의사 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의사 일정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중 의결권이 있는 참석 또는 대리 회원 가운데 4분의 3이상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특별 긴급 의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직접 또는 대리로 참석할 경우에 정족수를 구성한다. 만약 정기총회가 정족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안건으로 삼(3)주 내에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당 총회는 의결권 있는 회원들 가운데 참석자 또는 대리인 수에 관계 없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 경우 소집 통지서에는 정족수 규정이 배제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 (5)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이 있는 참석 또는 대리 회원 가운데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가 이루어진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6) 총회의 의결은 비밀투표로 한다. 만약 비밀투표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재표결한다. 재표결과가 다시 가부동수가 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7)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 절차를 위하여 총회의 회원들은 별도의 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 (8) 총회결과에 대한 의사록은 대표에 의하여 작성되며 총회의 의장과 대표가 서명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2인, 그 중 한국 국적의 회장 1인과 독일 국적의 회장 1인, 부회장 2인, 그 중 한국 국적의 부회장 1인과 독일 국적의 부회장 1인, 재무담당자, 대표 및 기타 1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한독상공회의소의 본질과 목적을 반영하고 동시에 회원사 대표들의 국적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대표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10인의 독일 국적을 가진 이사("독일 이사"), 그리고 10인의 한국 국적을 가진 이사("한국 이사")로 구성된다. 한 회원사당 1인만이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대표는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다.

한국 또는 독일 이외의 국적을 가진 후보자 최대 여섯(6) 명이 제5조(2)항에 명시된 법인 회원 대표인 경우,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후보자는 한국 이사 또는 독일 이사의 지위를 대리할 수 있다.

(2)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주재하며 두 회장 모두 부재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주재한다. 한국 및 독일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번갈아 가며 소집하고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대표를 제외하고 이사들은 명예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의 직책은 이사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현재 연회비가 완전히 납입 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법인회원은 대표에게 이사회 선출에 있어 적격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제안은 총회 최소 칠(7)일 전에 본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수령되어야 한다. 제안된 후보자의 수가 이사회의 공식인 직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만 총회 도중 제안된 후보자의 동의로 후보자가 제안될 수 있다.

(5) 선출된 이사회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사퇴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차기 총회 전까지 동일 국적의 정회원을 이사회 이사로 보선할 수 있다.

(6) 이사회 이사 자격이 임기 만료 전에 소멸되는 경우(예를 들어 법인회원 자격이 해지되거나 소속 회원사 퇴사)에는 이사회는 차기 총회 전까지 동일 국적의 정회원을 이사로 보선할 수 있다.

(7) 두 회장 모두 부재 시 독일 부회장이 차기 정기 총회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5조 이사회의 임무

(1) 이사회는 본 상공회의소의 활동을 촉진하고, 그 목적에 기여하여 본 상공회의소의 운영 지침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그 회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 및 독일연방경제기술경제기술부(이하 "BMWi"라 함)/DIHK와의 보조금 협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2) 규정에 의한 임무 외에 이사회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총회에 보고;
2. 대표의 제안을 기초로 회비를 결정;
3. 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을 결정;
4.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 감사의 보고서 검토;
5. 회계 연도의 본 상공회의소 예산 보고서 검토;
6. BMWi/DIHK의 감사 보고서 검토;
7. 대표가 제안한 조직구조의 변경의 의결;
8. DIHK의 제안을 기초로 대표의 선출 및 임명. 조기 퇴직은 DIHK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9. 본 정관 제3조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대표에게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

10. 법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총회, 회장, 대표에게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관한 권한;
11. 예외적인 사유로 대표의 지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 대표로서 부대표를 임명한다. 부대표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DIHK와 상의하여 부대표를 임명한다.

제16조 이사회 회의, 의결, 의사록

- (1) 이사회 회의는 대표와 협의하여 회장 중 일(1)인이 소집한다. 독일 회장은 상공회의소 재무 위원회를 담당하며, 한국 회장은 한국정부 및 기관에 대한 연락담당 그리고 관계진흥을 담당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3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회의 소집 통지서는 늦어도 회의 개최일 이(2)주 전까지 안건과 함께 송부되어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 기간 제한을 준수할 필요 없이 구두로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의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이(2)주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최소 50%가 출석한 경우 개의한다.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의결은 단순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회를 주재하는 자의 의결권에 의하여 결정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사회 이사들은 서명으로 표결할 수 있다.
- (3) 대표 또는 부대표는 이사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안으로 이사회 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의사록은 의사록을 기록하는 자와 회의를 주재하는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이 의사록은 이사회에 송부되고 차기 회의에서 이사회가 승인하여야 하며 차차기 회의 전까지 승인되어야 한다.
- (4) 이해의 충돌이 있는 이사회 회원은 관련 심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하는 이사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이사회 관련 표결에 참여해서도 아니된다. 이사회 위원의 이해 충돌의 여부는 이사회 단순 과반수로 결정된다. 위 문장은 해당 이사의 이해 충돌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제17조 재무담당자

재무담당자는 본 상공회의소의 재무 상황을 감독하고 장부 기록을 감시하며 재무제표의 작성 시 자문을 제공한다. 재무담당자는 본 상공회의소의 장부를 매년 검토하고 대표와 함께 총회에서 임명될 외부 감사인을 선출하고 연례 회계 감사에서 감사계약서를 발급한다.

제18조 재무 위원회

- (1) 재무 위원회는 재무담당자, 독일 회장 그리고 대표로 구성된다.
- (2) 재무 위원회는 대표에 의하여 소집되며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내부 및 외부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3) 재무 위원회는 BMWI/DIHK와의 보조금 협약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9조 대표

(1) 대표는 제15조 제(2) 항 제8호에 따라 DIHK의 제안을 기초로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임명된다. 이사회와 DIHK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표는 "IHK -Verband zur Förderung der Außenwirtschaft durch das AHK-Netz" (이하 "IHK-Verband" 라 함)에 의하여 고용된다. 이 경우 본 상공회의소와 IHK-Verband 간에 서비스 계약서가 체결된다.

(2) 대표는 본 정관, 이사회 결의안 및 정책 그리고 DIHK와의 협약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본 상공회의소의 모든 사업 활동을 책임진다. 이는 변경 사항의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모든 조치의 이행을 포함한다.

(3) 대표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자신을 보좌할 직원을 선임한다.

(4) 대표는 본 정관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업무, DIHK와의 협약서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결의안 또는 본 상공회의소의 승인된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5) 대표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이사회를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제한된다. 일상적 경영을 제외하고 대표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법인, 유한책임 회사, 제한적 또는 일반 파트너십, 합자 회사, 연맹, 공동투자 회사, 신탁, 재단, 기타 법적 사업장, 정부기관, 공사 또는 정치 유관 조직 등과 어떠한 형태의 자본출자나 자본 취득 또는 자본의 매각(고정 자산 또는 기계 장치 등의 취득 및 매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어떠한 형태의 자산 취득, 파트너십 등 (합병, 합자, 주식 교환 또는 흡수 등을 포함; 단 해당 거래금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로 회사의 자산이 매각, 임대, 교환 또는 기타 형태로 처분되는 경우; 단 해당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에 대한 거래금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함;
3.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를 불문한 회사의 차입 또는 대출 일체;
4. 근로계약을 제외한 5년 이내에 해지될 수 없는 모든 계약의 집행;
5. 상공회의소가 당사자인 부동산 임대계약의 집행;
6. 상공회의소에 의한 부동산 매각 및 매입 행위; 또는
7. 일반 비즈니스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거래 또는 활동 등

제20조 고문단 및 위원회



(1) 독일 및 한국 공동 회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본 상공회의소의 회원을 고문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고문단은 고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독일 또는 한국 회장은 고문단을 번갈아 가며 소집하고 주재하며 두 회장 모두 부재 시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2) 특별 위원회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다. 독일 회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1조 본 상공회의소의 수권대표자

대표는 법정 내외에서 본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회장은 대표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한다.

제5장 회계

제2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외부 감사

(1) 외부 감사는 한국 감사기준에 따라 본 상공회의소의 장부와 연간 재무제표를 감사하여야 한다.

(2) 외부 감사는 일(1)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임되며 한국에서 등록된 감사이어야 한다. 총회는 동일한 외부 감사를 최대 오(5)년 연속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외부 감사는 연간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서 본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공개되고 발표된다.

제6장 중재위원회

제24조 중재위원회

본 상공회의소 내의 분쟁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특히 본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삼(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본 정관 제11조 제(2) 항 제9호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중재인들이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위한 절차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개정

제25조

(1) 본 정관은 이사회의 제안 또는 법인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를 근거로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정관 변경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결에는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정관의 변경 또는 개정은 DIHK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8장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

제26조

(1)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은 오직 해산을 목적으로 소집되는 임시총회의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다. 해산은 이사회 또는 법인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법인회원이 제안하는 경우 발의서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발의서를 수령한 후 사(4)주 이내에 임시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2) 제13조 제(4)항과는 달리,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 결정을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참석 또는 대리 회원의 2분의 1이상으로이상으로 정족수를 구성한다. 대체 총회에 관한 본 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해산은 본 상공회의소의 법인회원 가운데 참석 또는 대리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 재산의 처분은 단순 과반수 의결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결정은 DIHK와 본 상공회의소 간의 보조금 협약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상공회의소의 해산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서에는 총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소집 통지서는 적어도 회의 삼(3)주 전에 발송하여야 하며 소집 통지서가 발송 되었을 때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정관의 효력

제27조

본 정관은 2017년 3월 29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해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전의 정관은 본 정관이 시행한 날에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립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이 시행한 날에도 효력을 유지한다.